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소방공무원징계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공무원 징계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풀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성 비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의 징계위원회 구성 비율 의무화, 시·도에 설치하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기관의 장이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풀 구성 근거마련(안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 나. 시·도에 설치하는 징계위원회 위원장 요건을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제2항 후단 신설)
- 다.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과 회의 시 민간위원 2분의 1 이상 참여 근거 마련(안 제4조 제6항 신설)
- 라. 성 비위 건 등 관련 동일 성별의 위원 3분의 1 이상 참여 의무화 근거 마련(안 제4조 제7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협의됨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조 제1항에 따르는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2.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르는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 제3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의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⑦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 ----- ----- -----, ----- ----- ----- --.
1. 소방청 및 시·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	1. 제2조 제1항에 따르는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2.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국립소방연구원·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	2.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르는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 <후단	② ----- ----- ----- ----- ----- -----, 다만 제2

신설>

③ ~ ⑤ (생략)

<신설>

<신설>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의 장이 소
속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
명 이상 6명의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
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⑦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
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
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
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
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운영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7044